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폭력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 효과*

김 미 애†

대구과학대학 의료복지과

본 연구는 부부간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분노가 폭력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제 가능한 조절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구 및 경북·부산 지역의 법적 처분을 받은 행위자들과 그 배우자가 되는 피해자와 일반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1,754명이었고, 법적처분 집단은 269명으로 가해자가 143명(53.16%), 피해자가 126명(46.84%), 일반인 총 1,476명으로 남편이 753명(51.02%), 아내가 723명(48.98%)이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처분 집단보다 일반인 집단 남편이, 부부간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대처방식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남편의 경우 일반인 집단이 법적 처분 집단보다 아내가 대처방식 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하였고, 폭력 집단의 경우 아내는 자신의 대처방식 행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남편 분노가 높으면 폭력 수준도 높았지만,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이 폭력 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넷째,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과 호소행동 또는 강력한 대처 방식 행동은 남편 폭력 수준을 높이는 역작용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가정폭력, 가정폭력유발요인, 폭력행동, 조절변수, 대처방식 행동

* 이 논문은 김미애(2008)의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수정 및 구성되었음.

† 교신저자 : 김미애, 대구과학대학 의료복지과 교수, E-mail : kmsangdam@hanmail.net

서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상 가정폭력의 결과는 가족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궁극적으로는 가정 해체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부간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우울감, 무력감, 고독, 자살 등의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 또한 우울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Haj-Yahia, 2001).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가정폭력이 주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자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김수율, 2006; 이영주, 2007).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더불어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한 인접 학문영역에서 가정폭력 행동 근절을 위한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김재엽, 1996; 이영주, 2007)를 먼저 시작하였고, 이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치료 개입을 위한 행위자 특성에 대한 연구(이서원, 2003; Dobash and Dobash, 1979) 그리고 폭력 행동 감소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들(김미애, 2006; 박민수, 2005; Johnson, 1995)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심리학 영역에서도 폭력 행위자에 속하

는 남편들의 반사회적 성향의 성격 특성과 학대당하는 여성의 심리특성, 부부간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 관계상의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다루어 오면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Margolin, 1998; Straus, 1979).

그러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행위자나 피해자의 성격 특성에서 비롯된 개인차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발생에는 단일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개인적 차원, 가족 체계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의 여러 가지 원인론적 틀이 동시에 고려되는 다차원적인 틀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ounsaville, 1978). 특히, 가정폭력 행동이 발생하는 데는 부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노나 폭력을 촉발시키는 원인변수가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 분노가 발생하고 폭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폭력 원인을 촉발시키는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해도 모두가 폭력 행동을 하지는 않고, 동일한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폭력 행동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성격이나 경험 등과 같은 개인차에 의해서 일수도 있고 당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노가 발생한 상황에 대처 방식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다(Berkowitz, 1993; Kinney & Segrin 1998). 이는 바로 분노라는 원인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서 분노라는 원인이 폭력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moderate)해 주는 변수가 있고 이 중재변수가 개입하여 상호작용 결과, 폭력행동이라는 결과변수의 영향에 변화를 줌으로써 분노를 조절해 주는 제 3의 변수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가정폭력 연구는 주로 가

정폭력의 실태를 기초로 한 폭력 예방과 그 대책 수립, 그리고 상담 개입 프로그램 수립에 이론적 토대가 된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김예정, 2001; 김지영, 2003)들에 중점을 두고 원인분석을 하는 경향이 많아 조절변수를 찾는 연구가 부족한 채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분노에서 폭력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식에 대한 조절변수 탐색 연구를 간과하였거나 폭력행동에 대한 조절변수의 효과를 밝힌 연구(김예정, 2001; 이영주, 2007)가 소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성격과 태도, 정신병리 등 주로 개인의 내적 특성과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조절 변수들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부적절한 성격과 과거경험에 치중되어 있어 적절한 치료 개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의 변수 탐색이 많았다.

부부간 발생하는 가정폭력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노가 폭력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수의 효과가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가정폭력 행동의 조절변수에 대한 규명은 가정폭력 상담현장에서의 치료프로그램 개입방향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양측의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입장에서 보는 조절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의 원인변수가 분노에서 폭력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를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조절변수를 규명하여 향후 가정폭력 피해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회복의 상담치료를 하는 지역 사회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현장에서 치료개입에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얻고

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용어의 혼란도 있지만 가족원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Straus와 Gelles(1990)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여성학적 시각에서는 가정폭력이란 여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가부장적 테러리즘에 그 본질이 있다 (Johnson, 1995)고 본다. 법적 시각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한 행위’로 규정하여 반드시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여 폭력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행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폭력, 기타 가족원에 의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자녀에 의한 노인폭력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일방인 경우로 한정하여 부부 중의 한 개인이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육체적, 심리적 학대를 하는 행위(Wallace and Seymour, 2001)로 정

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정폭력의 유발원인

가정폭력 현상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 중에서 정신병리학적 모델인 개인 내적 이론 (intra-individual theories)은 학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학대자의 개인 내적 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적인 결함, 정신병, 편집증, 사회병리학, 알코올과 약물남용, 개인 내부의 비정상적인 심리특성과 요인들을 가정폭력에 연결시키고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우울·공격성·의존성과 낮은 자아존중감 그리고 손상된 자아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강박장애·편집증·경계선 성격 등의 증상으로 연결된다고 본다(최상진, 이장주, 1999; Adams, 1988). 또한 이 접근에서 음주가 가정폭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 (Tolman and Bennett, 1990)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ies)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규범 가치 등 사회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의 원인을 찾으려는 이론이며 여기에는 일반체계이론과 구조이론, 문화이론 등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체계이론(system theory)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의 질에 따라 상호작용한 결과이거나 가족간의 갈등의 징후로 파악하면서 쌍방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즉,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족간에는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는 입장이며 이는 곧, 부부간 발생하는 가정폭력 행동은 서로의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니만큼 부부 모두가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Straus, 1979). 또한 구조이론(structural theory)에서도 스트레스와 좌절 그리고 차별과 박탈과 같은 폭력 유발요인의 차별적 분포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적 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teinmetz, 1987). 문화이론에서는 가부장적 태도, 보수적 성향 등 폭력문화를 중요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박경규, 1994).

한편,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사회조직과 개인특성과의 상호작용 결과 사회환경이나 집단속에서 개인이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관계의 경험이 연속되는 데 있다고 보았다(Steinmetz, 1987). Bandura(1973)는 폭력 행위를 하나의 관찰 학습된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행위자의 과거 가족 간의 폭력경험과 스트레스를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중요시하였다. 즉 개인이 겪는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 실직, 자녀 문제, 사회적 지위의 박탈감에 해당하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들은 가정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손현주, 1997). 갈등이론에서는 부부의 쌍방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가정폭력은 부부의 다양한 영역(경제적 사정, 시댁관계, 성생활 영역, 자녀 문제, 사회 상황 등)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이용미, 2003). 또한 피해자 유발론은 갈등 상황에서 아내의 무시하는 태도, 말대꾸 또는 자극적인 대화패턴이 폭력을 자극한다고 본다(최선화, 1994).

이상의 다양한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원인은 어느 한 요인만으로 분명하게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Rounsaville(1978)은 개인적 차원, 가족 체계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의 여러 가지 원인론적 틀이 동시에 고려되는 다차원적인 틀로 가정폭력의

원인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폭력 원인을 촉발시키는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한다고 해도 모두가 폭력 행동을 하진 않는다. 이는 개인의 성격과 과거 경험 등과 같은 개인차에 의해서 일수도 있고 당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내적·외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유발요인에 대한 특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대부분 연구는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에만 의존하여 한국 가정 부부들의 폭력원인에 대한 차별화가 부족한 채 진행되어왔다.

분노가 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

분노 및 폭력과 대처방식

분노는 연구자들의 연구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Rothenberg(1971)는 분노를 일종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보았으며, Novaco(1979)는 정서적 스트레스 반응 또는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일시적 심리내적 상태라고 개념지었다. 분노의 특성을 설명하는 Spielberger(1988)는 분노의 정서상태와 특질을 기준으로 분노를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하는 상태분노와 이와는 관계없이 비교적 개인의 분노유발 경향이 지속적인 특성분노로 나누어 분노를 설명하였다.

특히,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경향성으로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보다 많은 상황을 분노유발상황으로 지각하며, 더 자주, 더 강하게 상태분노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결국, 분노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결과로써 부적 행동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송미경, 2004). 이렇듯 분노의 발생기제를 보면 학자들의 이견이 많고 다양한데 최유경(2001)은 어떤 자극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어떤 개인이 가정폭력원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부정적 자극상황으로써 귀인한다면 그에 따라 신체·정서적 수준에서도 긴장이 생기고 나쁜 기분에 의해 부적 감정이 평가되어 마침내 분노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행동적 수준에서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이 분노를 발생시킨다(서수균, 2004). 분노 유발 과정을 모형화한 Berkowitz(1990)도 정서 발현에 있어 인지·정서·행동적인 면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 이론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기억이나 생리적 반응 등의 요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들 요소 중 하나가 활성화되면 이것이 다른 구성 요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견해이다(강신덕, 1997).

Zamble과 Quinsey(1996)의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폭력 행위 발생 직전에 경험한 부적 감정은 분노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 행동이 진행되는 중에 개인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매우 극단적이며 통제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바로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은 자신의 분노와 공포 또는 좌절로 인해 표출되는데 이때의 폭력행동은 대부분 가정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이 규미의 연구(1999)도 분노의 유발요인과 폭력 행동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분노의 발생

원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의 상황을 부당하다고 인지하게 되면 이 부정적 인지 요소가 나쁜 정서를 유발시킨다고 보았고, 이때의 분노발생 과정은 바로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순간적으로 연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Berkowitz(1990) 연구도 인지, 정서, 행동적인 면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이론에 기초를 두고 분노 유발과정을 모형화하였다. 즉, 부정적 정서가 분노와 관련된 정서와 사고를 촉발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정적 행동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분노유발과 폭력행동 발생직전에서 분노를 경감시키고 조절하는 과정에는 인지, 정서, 표현 행동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가정폭력발생 직전의 부적 정서가 분노라는 것을 통해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노가 폭력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들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Kassimov와 Eckhardt(1995)연구는 개인의 분노와 공격적 폭력 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분노 및 공격성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인이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각각 다르며, 개인이 분노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그 폭력행동의 표현 양상도 다르게 조절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인지적 재구조화 등의 긍정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개인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반면, 회피 등의 부정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분노를 부적절하게 억제하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부적응적인 분노 표현 양상을 보여 분노

조절에 실패하여 폭력에 이른다는데 있다. 대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공포·좌절·무시·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이런 감정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폭력행동을 보이는 저통제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사건에 대한 지각된 원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식을 부정적으로 하여 결국 폭력 행동에 이르게 되며 그 폭력의 대상이 주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Kinney and Segrin(1998)의 연구에서도 부적 사건에 대한 지각에 의해 분노를 경험한다 하여도 이 상황에서 원만한 기능적 의사소통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분노라는 원인이 폭력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moderate)변수가 개입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폭력행동이라는 결과변수에 영향을 변화를 줌으로써 조절해 주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가정 폭행이 발생하는 부부들의 경우,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은 이 상황을 부적상황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부적 정서를 유발시킴으로써 폭력행동으로 진전하였다. 즉, 그들은 여기서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에 동조하는 비율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아내 폭행이 일어나지 않는 부부들은 부정적 상호작용에서 적대감이 고조될 때, 재빨리 본인의 긴장된 감정을 완화하거나 상대의 감정이 완화되도록 배우자가 효율적인 대처를 하여 긴장된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상황에 있는 부부

들의 자기표현 능력의 결핍은 배우자와 자기 사이에서 서로의 욕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김정옥·송정아·김득성, 1999; 김정옥·정현미·이현혜, 1992). 더욱이 남성의 공격적 행동을 당위시하는 가부장적 문화에서의 남성은 자신의 남성상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폭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심혜숙·손연주, 1997; 최선령, 2001) 가정폭력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김정옥 등(1992)도 폭력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폭력을 초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 스트레스 사건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킴으로써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Pelham(1991)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낮더라도 가족의 지지나 적극적인 대처 기술 또는 사회적 관심의 지지, 곧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때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효율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하여 폭력행동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제시하였다.

분노조절 변수의 선행연구를 보면 Averil(1982)는 분노조절의 요소들은 문제를 해석하고 다루는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 능력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노조절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실제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 사회기술을 학습하는 적절한 행동을 연습시킴으로써 분노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사회기술 훈련과 인지-행동적 기술과 자기표현 훈련 및 스트레스 상

황시 긴장이완 훈련이 있다. 둘째, 인지-행동적 접근은 인지와 감정 그리고 행동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적용원리를 제공함으로써, 분노를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이 접근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Larson, 1992),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분노와 공격성이 조절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긴장이완 훈련방식은 분노가 인지적 요소와 정서와 신체적 상호작용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본인의 분노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심리내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Deffenbacher 등(1996)은 사회적 기술 집단과 인지기완집단 그리고 통제집단 사이에서 분노조절의 효과를 비교하고 검증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이 분노와 불안을 경감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어떤 개인이 부적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하더라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대처기술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이 있으면 폭력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 가해자의 분노발생에서 우선시할 것은 그들의 분노를 적절하게 수용해 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분노를 조절해 주는 변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분노를 통하여 폭력행동으로 발전해 갈 때 그 조절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본다.

연구과제

현재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대처

방식이 폭력행동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일부 확인된 바는 있으나 분노와 폭력간의 조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부부간 발생하는 가정폭력 행동을 완화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폭력에 대해 조절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정폭력 부부치료에서 폭력원인 규명에 따른 치료개입의 근거가 되는 분노 및 폭력의 조절변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실시되는 상담 프로그램들은 가정폭력 행동 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절변수들의 규명은 추후 가정폭력을 예측하고 부부간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유발요인들이 분노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에 의하여 조절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어떤 처치나 조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분노 발생 시 폭력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절 변수에 해당하는 조건이 성립될 경우 분노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둔화될 수 있고 반대로 분노에서 폭력으로 증폭될 수 있다. 완화와 강화의 조절변수의 효과가 파악된다면 가정폭력 행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치료개입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전반적 가정문제에 대한 원인에 따라 분노나 폭력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행위자나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완화를 위한 대처방식에 따라 분노나 폭력행동이 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상으로 폭력조절 변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가정폭력 행동의 대처방식 행동으로써 조절가능성을 모

색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구체적 연구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원인이 분노로 발전하는데 있어 조절변수를 규명하고,

둘째, 분노가 폭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조절변수를 규명하고,

셋째, 원인, 분노, 폭력의 과정 속에서 일반 부부와 폭력가정 부부간 조절변수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한다.

연구방법

조사 절차

가정폭력 원인 변수가 분노와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조절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15일 ~ 2008년 3월 1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법적 처분을 받은 행위자들과 그 배우자가 되는 피해자와 일반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서울·대구·경북·부산 지역으로 나누어 할당된 각 지역 내에서 편의표집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위탁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의 처분 및 상담위탁 처분 7호 등의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폭력을 피하여 심리치료를 받거나 폭력으로부터 피신을 하기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쉽터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연구자가 편의적 추출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총 1,754명이었다. 이 중 가정폭력이 빈번한 집단으로서의 법적 처분집단은 269명으로, 가해자인 남편 143명(53.16%)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법적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며, 피해자 여성 126명(46.84%)은 그들의 남편이 법적처분을 받은 바 있는 행위자들의 아내들이다. 일반인 집단은 총 1,476명으로 남편이 753명(51.02%), 아내가 723명(48.98%)이다.

조사 도구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그 영향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5점 척도의 형식을 보면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약간 그런 편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정폭력 유발척도

가정폭력 유발척도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김미애, 2008)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총 43문항이다. 남편용 설문지에는 자녀 문제 요인(3문항)을 제외한 7개 요인 40문항에 대해 ‘내가 ~ 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형식에 한 번씩 총 80문항과 자녀 문제 3문항을

표 1. 조사 대상자

집단	남편	아내	전체
	N(%)	N(%)	N(%)
일반인 집단	753(51.02)	723(48.98)	1476(84.58)
법적 처분 집단	143(53.16)	126(46.84)	269(15.42)
전체	896(51.35)	849(48.65)	1745(100.00)

표 2. 가정폭력 유발척도의 구성

	문항수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요인 1. 가정 소홀	5	.77	2.07(.82)
요인 2. 성적 소홀	7	.78	1.59(.52)
요인 3. 알코올 의존	4	.88	2.21(1.10)
요인 4. 역기능적 의사소통	8	.86	2.41(.86)
요인 5. 배우자에 대한 집착	4	.78	1.98(.91)
요인 6. 자녀 문제	3	.80	1.80(.85)
요인 7. 외도	7	.92	1.69(.83)
요인 8. 집안 간 갈등	4	.77	1.99(.85)

더하여 총 8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녀 문제 3문항은 ‘아이가 ~ 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형식이어서 한번만 응답하게 하였다. 아내용 설문지는 질문 형식이 ‘남편이 ~ 했기 때문이다’로 바뀐 것 외에는 남편용과 동일하였다.

분노와 폭력 행동 척도

분노 척도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검증한 척도(김미애, 2008)를 사용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분노 각각 10문항씩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폭력 행동 척도도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남편 폭력행동과 남편에게 행하는 그들의 아내의 폭력행동을 각각 12문항씩 측정하게 되어 있다.

표 3. 분노와 폭력행동 척도

	문항수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1 행위자 분노	10	.90	1.78(.64)
2 행위자 폭력	12	.94	2.08(.92)
3 피해자 분노	10	.88	2.25(.73)
4 피해자 폭력	12	.94	2.42(1.00)

대처방식 척도

대처방식척도 문항은 부부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유는 분노와 폭력 행동과정에서 아내가 폭력행동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식 행동과 남편이 폭력행동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식 행동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대처방식 척도를 구성함에 있어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김정옥, 송정아, 김득성, 1999; 박경규, 1994; Haj-Yahia, 2001; Pelham, 1991) 가정폭력 행동을 낮추는 대처방

식 행동 요인(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대처방식 등)을 검토하고, 이들 요인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들의 각각의 변수명들은 결국 가정폭력 행동을 경감하거나 멈추게 하여 폭력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방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척도명을 대처방식이라 명명하였다.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김미애, 2008) 확인된 대처방식 척도는 3개 요인 16문항의 남편 대처방식 행동과 6개 요인 24문항의 아내 대처방식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위자 대처방식 척도 문항의 1요인에는 ‘나는 아내와 한 때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였다’, ‘나는 가족과 좋았던 때를 생각하였다’, ‘나는 아이들과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린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요인을 ‘회상’요인으로 명명하였다. 1요인은 총 8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82였다. 요인 2는 ‘나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한다’, ‘나는 부딪혀 싸우기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요인을 ‘회피’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2요인은 총 4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76이었다. 요인 3은 ‘나는 아내와의 갈등이 나의 과거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내의 공격성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이 요인을 ‘자신 탓’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3요인은 총 4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44였다.

아내 대처방식 행동 요인 척도 문항의 요인 1은 ‘아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로 감싸준다’, ‘아내가 나를 놓은 말로 위로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요인을 ‘적극적 대처’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1요인은 총 8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88였다. 요인 2는 '아내는 때리는 것에 대해 증거를 남기겠다고 말한다', '아내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 등의 문항을 내포하고 있어 이 요인을 '법적 호소'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2요인은 총 5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83였다. 요인 3은 '아내가 일단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한다', '아내가 나와 충돌하기 전에 도망간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요인을 '갈등 상황 도피'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3요인은 총 3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78였다. 요인 4는 '아내의 친정부모는 우리 부부가 갈등할 때 옳고 그른 것을 공평하게 평가해준다', '아내의 가족은 우리가 갈등상황에 있을 때 내편을 들어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요인을 '아내 부모의 개입'이라 명명하였다. 4요인은 총 3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89였다. 요인 5는 '아내가 사는 게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한다', '아내가 자기의 힘든 입장을 솔직히 말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요인을 '아내 호소'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5요인은 총 3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82였다. 요인 6은 '아이들이 울면서 싸움을 말린다', '아이들은 우리 부부 모두가 자기들에게 필요하니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

하고 있어 이 요인을 '자녀의 호소'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6요인은 총 2문항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82였다.

연구결과

집단별 부부에 따른 남편 대처방식 행동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고, 집단별 부부에 따른 남편 대처방식 행동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부부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집단과 부부 모두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법적 처분 집단보다 일반인 집단의 남편이 더 많은 대처방식 행동을 보이고, 부부간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대처방식 행동을 더 많

표 4. 집단별 부부에 따른 남편 대처방식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법적 처분 집단	일반인 집단	전체
남편	2.47(.42)	2.65(.70)	2.62(.66)
아내	2.32(.60)	2.56(.67)	2.52(.66)
전체	2.40(.52)	2.60(.68)	2.57(.66)

표 5. 집단별 부부에 따른 남편 대처방식 행동에 대한 이원변량 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집단(A)	1	9.98	9.98	23.00**
부부(B)	1	3.08	3.08	7.09*
A×B	1	0.19	0.19	0.44
오차	1735	752.86	0.43	----
전체	1738	766.75	-----	

* $p < .01$, ** $p < .001$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부부에 따른 아내 대처방식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집단별 부부에 따른 아내대처방식 행동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과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법적 처분 집단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대처방식 행동을 하였고 일반인 집단의 경우 남편과 아내 간 대처방식 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경우 집단에 관계없이 비슷한 대처방식 행동을 보인 반면 아내의 경우 법적 처분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대처방식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적 처분집단 아내의 경우 남편의 폭력이 법적 대상이 될 정도로 심하여 대처방식 행동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남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원인, 남편 분노, 대처방식 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법처분의 남편 집단, 법적 처분 집

표 6. 집단별 부부에 따른 아내 대처방식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법적 처분 집단	일반인 집단	전체
남편	2.30(.49)	2.67(.77)	2.61(.74)
아내	2.64(.71)	2.70(.73)	2.69(.72)
전체	2.46(.62)	2.68(.75)	2.65(.73)

표 7. 집단별 부부에 따른 아내 대처방식 행동에 대한 이원변량 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집단(A)	1	10.24	10.24	19.34**
부부(B)	1	7.82	7.82	14.78**
A×B	1	5.60	5.60	10.58*
오차	1736	919.03	0.53	
전체	1739	938.43		

* $p < .01$, ** $p < .001$

표 8. 집단별 부부에 따른 아내 대처방식 행동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집단 at 남편	1	16.43	16.43	30.63*
집단 at 아내	1	0.33	0.33	0.63
부부 at 법적 처분 집단	1	7.88	7.88	21.74*
부부 at 일반인 집단	1	0.30	0.30	0.54

* $p < .001$

단의 아내 집단, 일반인 남편 집단, 일반인 집단의 아내 집단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는 법적 처분 남편 집단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남편 분노와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 아내의 호소 대처방식 행동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분노가 폭력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아내의 법적 호소, 일반적인 호소가 폭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표 10은 법적 처분 집단에서의 남편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지만, 남편이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을 많이 할수록 남편 폭력 수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이 남편 폭력을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법적 처분 집단에서의 남편 집단의 다중회귀 분석

변수	자유도	b	평균오차	t
절편	1	2.17	0.10	21.91***
남편원인	1	0.05	0.15	0.30
아내원인	1	-0.02	0.14	-0.17
남편분노	1	0.72	0.13	5.71***
남편조절-회상	1	-0.17	0.14	-1.15
남편조절-회피	1	-0.35	0.15	-2.41*
남편조절-심리적 긴장완화	1	0.13	0.12	1.11
아내조절-적극적 대처	1	-0.01	0.13	-0.08
아내조절-법적 호소	1	0.18	0.09	1.92
아내조절-회피	1	0.05	0.09	0.56
아내조절-호소	1	0.22	0.11	2.01*
남편분노×회상(H)	1	0.17	0.15	1.17
남편분노×회피(H)	1	0.16	0.14	1.17
남편분노×심리적 긴장완화(H)	1	-0.21	0.10	-2.13*
남편분노×적극적 대처(W)	1	-0.14	0.14	0.98
남편분노×법적 호소(W)	1	-0.21	0.08	-2.64**
남편분노×회피(W)	1	0.10	0.10	1.04
남편분노×호소(W)	1	-0.23	0.10	-2.14*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남편 분노와 심리적 긴장완화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남편조절- 심리적 긴장완화			
상	2.90(.51)	2.07(.62)	2.78(.61)
하	3.04(.45)	1.83(1.01)	2.96(.58)
전체	2.98(.48)	1.99(.75)	2.87(.60)

표 11은 법적 처분 집단에서 남편 집단의 남편 분노와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을 하더라도 남편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편의 폭력 행동을 줄이는 데 있어 아내의 법적 호소 행동은 남편의 폭력 수준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의 증폭을 의미하게 가져다주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처벌

표 11. 남편 분노와 법적 호소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아내조절- 법적 호소			
상	3.00(.45)	2.17(.77)	2.93(.53)
하	2.61(.79)	1.48(.40)	2.24(.87)
전체	2.98(.48)	1.99(.75)	2.87(.60)

법의 기준으로 보면 법적 처분이 좀 더 강력하지 못한 이유로 보여 질 수 있으며, 법적 처분으로서 상담의 실효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가족에게 가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행위의 주체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규제가 요망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의 대처방식 측면에서 보다 행위자의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대처기술 훈련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는 부부가 함께 받는 가정폭력 상담 현장에서 폭력 증폭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표 12는 법적 처분 집단의 남편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아내의 호소 대처방식 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아내의 대처방식 행동(호소)에도 남편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폭력이 일상화된 법적 처분집단의 경우 아내의 호소는 남편의 폭력 행동을 증폭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었다.

표 12. 남편 분노와 호소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아내조절- 호소			
상	2.97(.48)	2.23(.84)	2.90(.56)
하	2.99(.49)	1.71(.56)	2.83(.66)
전체	2.98(.48)	1.99(.75)	2.87(.60)

표 13은 법적 처분 집단에서 아내 집단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남편분노와 행위자 조절요인 중 심리적 긴장완화 요인과 피해자 조절요인 중 회피 요인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4는 법적 처분 집단에서의 아내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남편이 심리적 긴

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을 많이 할수록 남편 폭력 수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의 주체인 남편의 정신적 영역에 있는 심리적 긴장완화가 피해자의 다양한 대처방식 행동의 접근보다 더 중요한 폭력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는 법적 처분 집단의 아내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아내의 회피 조절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표 13. 법적 처분 집단에서의 아내 집단의 다중회귀 분석

변수	자유도	b	평균오차	t
절편	1	2.56	0.12	21.10***
남편원인	1	0.34	0.16	2.05*
아내원인	1	-0.24	0.14	-1.76
남편분노	1	0.35	0.09	3.81***
남편조절-회상	1	0.08	0.13	0.64
남편조절-회피	1	-0.02	0.12	-0.14
남편조절-심리적 긴장완화	1	-0.30	0.12	-2.43*
아내조절-적극적 대처	1	0.11	0.12	0.92
아내조절-법적 호소	1	0.23	0.12	1.87
아내조절-회피	1	-0.13	0.11	-1.22
아내조절-호소	1	-0.35	0.10	-3.44***
남편분노×회상(H)	1	-0.12	0.10	-1.16
남편분노×회피(H)	1	-0.06	0.09	-0.75
남편분노×심리적 긴장완화(H)	1	0.31	0.10	3.27**
남편분노×적극적 대처(W)	1	-0.10	0.08	-1.19
남편분노×법적 호소(W)	1	-0.06	0.08	-0.75
남편분노×회피(W)	1	0.17	0.07	2.30*
남편분노×호소(W)	1	0.13	0.07	1.83

* $p < .05$, ** $p < .01$, *** $p < .001$

표 14. 남편 분노와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남편조절- 심리적 긴장완화			
상	3.00(.69)	1.86(.38)	2.72(.80)
하	3.28(.64)	2.66(.60)	3.23(.65)
전체	3.21(.66)	2.21(.62)	3.08(.73)

표 15. 남편 분노와 회피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아내조절- 회피			
상	3.30(.66)	2.49(.55)	3.21(.70)
하	3.00(.61)	1.75(.46)	2.81(.74)
전체	3.21(.66)	2.21(.62)	3.08(.73)

표 16. 일반인 집단에서의 남편 집단의 다중회귀 분석

변수	자유도	b	평균오차	t
절편	1	1.85	0.02	122.34***
남편원인	1	0.09	0.04	2.24*
아내원인	1	0.07	0.04	1.79
남편분노	1	0.30	0.02	14.67***
남편조절-회상	1	0.02	0.02	0.82
남편조절-회피	1	-0.03	0.02	-1.54
남편조절-심리적 긴장완화	1	-0.07	0.02	-3.93***
아내조절-적극적 대처	1	-0.02	0.02	-0.92
아내조절-법적 호소	1	0.30	0.02	13.21***
아내조절-회피	1	0.03	0.02	1.58
아내조절-호소	1	-0.01	0.02	-0.77
남편분노×회상(H)	1	0.03	0.03	1.34
남편분노×회피(H)	1	-0.01	0.02	-0.45
남편분노×심리적 긴장완화(H)	1	-0.07	0.02	-3.08**
남편분노×적극적 대처(W)	1	0.01	0.02	0.50
남편분노×법적 호소(W)	1	0.15	0.03	5.71***
남편분노×회피(W)	1	0.05	0.02	2.42*
남편분노×호소(W)	1	0.03	0.02	1.53

* $p < .05$, ** $p < .01$, *** $p < .001$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아내의 회피 대처 방식 행동이 많아질수록 남편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 처분집단 남편의 경우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어 회피 대처방식 행동이 남편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은 일반인 집단 남편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남편 분노와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 그리고 아내의 회피 대처방식 행동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7은 일반인 집단의 남편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을 많이 할수록 남편 폭력 수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폭력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방식은 타인의 행동이나 언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행위

자 본인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 긴장완화의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8은 일반인 집단의 남편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이 많아질수록 남편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분노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의한 제어수단이 한계에 이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 남편 분노와 아내의 법적 호소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아내조절- 법적 호소			
상	2.41(.62)	1.88(.48)	2.21(.62)
하	1.79(.46)	1.47(.29)	1.56(.38)
전체	2.05(.61)	1.53(.36)	1.73(.53)

표 17. 남편 분노와 남편 심리적 긴장완화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남편조절- 심리적 긴장완화			
상	1.95(.57)	1.48(.34)	1.68(.51)
하	2.18(.64)	1.57(.36)	1.77(.55)
전체	2.05(.61)	1.53(.36)	1.73(.53)

표 19. 남편 분노와 아내 회피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아내조절- 회피			
상	2.28(.64)	1.64(.42)	2.02(.64)
하	1.81(.48)	1.50(.33)	1.58(.40)
전체	2.05(.61)	1.53(.36)	1.73(.53)

표 19는 일반인 집단의 남편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아내의 회피 대처방식 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아내의 회피 대처방식 행동이 많아질수록 남편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은 일반인 집단에서의 아내 집단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남편의 분노와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 간에 상

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1은 일반인 집단의 아내 집단에서 남편 분노와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았고,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이 많아질수록 남편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일반인 집단에서의 아내 집단의 다중회귀 분석

변수	자유도	b	평균오차	t
절편	1	1.84	0.02	108.54***
남편원인	1	0.13	0.05	2.71**
아내원인	1	0.11	0.05	2.28*
남편분노	1	0.37	0.02	15.88***
남편조절-회상	1	-0.03	0.02	-1.19
남편조절-회피	1	-0.05	0.02	-2.54*
남편조절-심리적 긴장완화	1	-0.04	0.02	-2.12*
아내조절-적극적 대처	1	0.00	0.02	0.02
아내조절-법적 호소	1	0.18	0.02	7.96***
아내조절-회피	1	0.00	0.02	0.21
아내조절-호소	1	0.01	0.02	0.51
남편분노×회상(H)	1	-0.04	0.03	-1.45
남편분노×회피(H)	1	-0.02	0.02	-0.68
남편분노×심리적 긴장완화(H)	1	0.01	0.03	0.47
남편분노×적극적 대처(W)	1	0.02	0.03	0.62
남편분노×법적 호소(W)	1	0.06	0.02	2.48*
남편분노×회피(W)	1	0.04	0.02	1.85
남편분노×호소(W)	1	0.03	0.03	1.31

* $p < .05$, ** $p < .01$, *** $p < .001$

표 21. 남편 분노와 아내의 법적 호소 요인에 따른 남편 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 분노		
	상	하	전체
	M(SD)	M(SD)	M(SD)
아내조절- 법적 호소			
상	2.53(.60)	1.74(.51)	2.25(.68)
하	2.01(.58)	1.44(.28)	1.60(.47)
전체	2.30(.64)	1.50(.37)	1.84(.64)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통제 가능한 조절변수의 제시를 통해 가정폭력 조절변수를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검증한 가정폭력원인, 분노, 폭력행동, 조절 척도(김미애, 2008)를 적용하여 분노가 폭력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143명)와 피해자(126명) 그리고 결혼한 일반 성인 남편(753명)과 아내(723명) 총, 1,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법적 처분 집단보다 일반인 집단에서 남편이 더 많은 대처방식 행동으로 조절 행동을 보이고, 부부간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대처방식 행동을 하였다. 또한 일반인 집단 남편이 법적 처분 집단 남편들보다 아내 대처방식 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법적 처분 집단의 경우 아내가 남편보다 대처방식 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하였다. 남편 분노가 높은 집단이 남편 분노가 낮은 집단에

비해 남편 폭력 수준은 높지만, 남편이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을 많이 할수록 남편 폭력 수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과 호소행동 또는 강력한 대처 방식의 행동은 남편 폭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오히려 폭력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나쁜 경험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지각에 의해 분노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일반 남편이 법적 처분을 받은 남편보다 효과적으로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호작용을 보였다는 Kinney and Segrin(1998)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특성 중 분노 조절력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김예정(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신병리 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생활에서는 각 구성원에게 좌절을 줄 수 있는 많은 사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 느끼는 좌절된 감정 중 하나인 분노감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 그 반응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또한 김재엽과 이서원(1997)의 연구와 김예정(2001)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분노가 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행위자가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결국, 본 연구에서 파악된 폭력행동을 조절하는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남편의 폭력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의 폭력행동을 증폭시키는 것이 있다.

폭력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서 행위자 조절은 본인의 내적 과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긍정적 경험’, ‘갈등 상황 도피’, ‘심리적 긴장 완화’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행위자가 분노가 발생했을 때 폭력조절을 돕는 것은 그 자신이 ‘심리적 긴장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법적 처분 집단의 경우, 남편이 심리적 긴장완화 조절행동을 많이 할수록 남편 폭력행동의 수준은 줄어들었지만, 아내의 강한 법적 대응이나 일방적 변명조의 호소 대처방식 행동은 오히려 남편의 폭력 수준을 증폭시켰다.

물론, 본 연구자는 폭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폭력행동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폭력행동을 완화시키는 조절변수는 덜 나타나고 폭력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더 잘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결국, 법적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집단의 경우 남편의 대처방식 행위만이 폭력행위를 제어할 수 있고 아내의 자극적인 대처방식 행동은 오히려 남편의 폭력행동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결국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경감하는 것은 행위자 자기 스스로의 대처방식 행동이 폭력을 조절하는 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규미(1999)와 Kassiove(1995) 연구에서 시사받은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이 연구들은 분노원인이 되는 사건과 당시 상황, 개인차에 의해 부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정서속에 나쁜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나 상황에 부당하다는 인지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 감정적, 인지적 요소가 연합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Zamble와 Quinsey(1996)의 선행연구에서도 분노는 인간의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 중 하나로써 행위자들의 폭력 행위 발생 직전에 경험한 부적 감정이 분노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면서 결국 폭력행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특성분노가 높기 때문에 이때 아내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처가 폭력행동을 경감시키기도는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 폭력을 증폭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들은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행동이 진행되는 중에 개인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극단적이며 조절이 잘 안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는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 행동이 나타나 분노와 공포 또는 좌절에 자극을 받은 행위자는 주로 가정에서 가족을 일차적 대상으로 폭력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의 가정폭력 대처방식 척도(김미애, 2008)를 구성할 때 실시된 인터뷰상에서 밝혀진 결과에서도 분노에 대한 대처방식 행동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폭력행동의 조절이 어렵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분노가 발생하고 이것이 폭력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노의 대처방식 행동 단계에서는 행위자의 대처방식 행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나타난다. 이때 아내의 적절한 기능적 대화방법과 가족들의 개입은 분노를 완화시키는 대처방식 행동으로 조절에 영향을 주었지만 폭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행위자가 이미 극도로 흥분된 상태가 되어 자제가 어려웠다는 경험을 이야기한 행위자들의 응답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즉, 분노의 대처방식 행동 단계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가족이나 이웃 또는 사회적 지지 등의 외부의 개입이 분노에 대처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이 단계를 놓쳐버린 폭력에 대처하는 단계에 와서는 외부의 힘은 오히려 행위자의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가중시켜 더욱 공격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의 힘보다는 행위자 자신의 심리내적 조절행동에 의존하는 것이 폭력행동에 감소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문제해결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링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화난 감정이나 분노를 적절히 표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자발적 의지를 부여해주는 전문적 치료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특히, 법적 처분 집단의 남편이 일반인 집단의 남편보다 대처방식 행동에 있어서 더욱 자제력이 취약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생활 속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폭력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인지적 재구조화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대처방식 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밝혀진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 중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은 행위자의 폭력행동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폭력을 완화시키는 조절변수로서 그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내적 심리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 변수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결과해석과 또 하나는 남편의 폭력행동을 낮추기 위해 대처했던 아내의 법적 대응이나 호소 그리고 강력한 대처방식 행동은 남편의 폭력행동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피해자의 관점이 배제되었고 이러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대처와 변명으로 일관한 호소행동은 오히려 폭력행동을 순간적으로 더

욱 자극하여 폭력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이다. 이는 부부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행위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강력한 자기주장과 더불어 법적 체계를 활용하는 적극적 대처를 주장하는 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행동 감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구성과 치료개입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상담치료 개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여 폭력행동을 촉발하게 될 때, 인지적 재구조화에 따른 긍정적 대처방안을 가짐으로써, 폭력행동이 가장 잘 완화됨을 보고한 Zamble과 Quinsey (199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반영한 본 연구 결과에서 행위자의 자기 자신의 심리적 긴장완화의 조절효과가 중요하게 나온 결과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조절행동을 높일 수 있는 내적 심리기능의 강화를 치료 요인방안으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아내의 법적 대응, 호소, 강력하거나 때늦은 적극적 대처는 폭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피해자의 관점이 배제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대처, 변명으로 일관한 호소행동, 경찰에 신고하는 법적대응 행동은 오히려 행위자의 분노를 자극시켜 폭력행동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이다. 이는 부부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를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로서 상담현

장에서는 가정폭력 행동 감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치료개입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담치료개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행동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상담가들이 폭력행동을 완화시키는 조절변수와 오히려 폭력행동을 증폭시키는 조절변수를 분리하여 상담프로그램의 치료요인으로써 적극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밝혀진 조절변수를 근거로 더욱 더 구체적인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애 (2006).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개입 프로그램 효과: 집단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19-546.
- 김미애 (2008).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율 (2006).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예정 (2001). 성장기 폭력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엽 (1996).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개입 방안 연구: 임상 치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93, 19-35.
- 김재엽, 이서원 (1997). 열등의식과 성 역할 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모형에 관한 연구: 영세 빈곤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3, 71-93.
- 김정옥, 송정아, 김득성 (1999). 의사소통관점에서의 가족폭력.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대회 발표자료집, 67-72. (1999. 10. 23. 숙명여자대학교.)
- 김정옥, 정현미, 이현혜 (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합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20, 21-44.
- 김지영 (2003).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인과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수 (2005).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6(1), 137-154.
- 손현주 (1997).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심리적 특성 연구: Satir 가족치료 모델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경 (2004). 알콜의존 환자의 분노유발요인과 분노처리과정에 대한 체험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혜숙, 손연주 (1997).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특성연구. 여성학연구, 7(1), 65-89.

- 이규미 (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한 체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서원 (2003).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주 (200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경로탐색.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미 (2003). 중년여성의 분노경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 이장주 (1999). 친밀 대인관계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자아관여적 정서: 무시(無視).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초록집, 58-61. 8월 19일. 서울: 연세대학교 제2인문관.
- 최선령 (2001). 한국 아내학대자의 학대행동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275-311.
- 최선화 (1994). 아내구타와 여성 컴퓨터활동에 관한 일고. 여성연구논집, 5, 143-153.
- 최유경 (2001).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dams, D. (1988). Treatment models of men who batter: A profeminist analysis. In K. Yllo, & M. Bograd (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pp.176-199).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Averill, J. R. (1982).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982, pp.1145-1158.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Berkowitz, L. (1990).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Huff, M. E. Cornell, G. R., & Dallager, C. J., (1996). Evaluation of two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to general anger reduc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pp.551-573.
- Dobash, R. E., & Dobash, R. (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Y: Free Press.
- Haj-Yahia, M. M. (2001). The incidence of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some of i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among arab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5(7), 885-907.
- Johnson, M. P. (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83-294.
- Kassinove, H., & Eckhardt, C. I. (1995). An anger model and a look to the future. In H. Kassinove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197-204). London: Taylor and Francis.
- Kinney, T., & Segrin, C. (1998). Cognitive moderators of negative reactions to verbal aggression. *Communication Studies*, 49, 49-72.
- Larson, J. D., (1992).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Techniques through the think first curriculum. *Jour of offender Rehabil* 18(1), 1992, pp.101-107.
- Morgolin, G., John, R. S., & Foo, L. (1998).

- Interactive and unique risk factors for husband'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their wiv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4), 315-344
- Novaco, R. W. (1979). The cognitive regulation of anger and stress. In P. C. Kendall, & S. D. Hollon (Eds),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Theory, research and procedures* (pp.203-206). NY: Academic Press.
- Pelham, B. W. (1991). On the confidence and consequence: The certainty and importance of self-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18-530.
- Rounsaville, B. J. (1978). Theories in marital violence: Evidence from a study of battered women. *Victimology*, 3(1-2), 11-31.
- Rosenberg, A. (1971).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4), 454-460.
-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Orlando,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teinmetz, S. K. (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725-765). New York: Plenum.
- Straus, M. A. (1979, February).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1.
- Straus, M. A., &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Tolman, R. M., & Bennett, L. W. (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87-118.
- Wallace, H., & Seymour, A. (2001). Domestic violence. In G. Coleman, M. Gaboury, M. Murray, & A. Seymour (Eds.), *1999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ademy*.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 Zamble, E., & Quinsey, V. K. (1996). *The criminal recidivism proces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0. 7. 31.
심사통과접수 : 2010. 12. 2.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5.

A study on the Effects of Moderator Variable on the Relation between Domestic Violence Inducing Factor and Violent Behavior

Kim Mi Ae

Daegu Science College Dept. of Medical Welfar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moderator variable for domestic violence by presenting controllable moderator variable in domestic violence occurring between married couples.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course in which rage develops to violent behavior.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to the subjects being consisted of legal group(n=269) including assaulter(n=143; 53.16%) who had been subjected to legal measure and victims(n=126; 46.84%) who were their spouse, and control group(n=1,476) including general married men(n=753; 51.02%) and women(n=723; 48.98%), and being recruited from Seoul, Daegu, Kyungbuk, and Pusan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 A total of 1,476 subjects particip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ntrol group showed higher percentage of behavior of a coping scale of husband than legal group. The husbands showed higher percentage of behavior of a coping scaler than wives. As for husbands, husbands of control group showed higher percentage of wife behavior of a coping scale than them of legal group. As for legal group, wife showed more behavior of a coping scale than husband. Although the intensity of violence increased as the anger of husband is higher, as the mind control behavior of a coping scale of husband increased the intensity of violence of husband decreased. It was also showed that the intensity of violence of husband remained increasing even wife deployed behavior of a coping scale of legal appeal, appealing behavior, and strong dealing method.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inducing factor, violent behavior, moderator variable. behavior of a coping scale